

2026 주택관리사 기본서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정오사항 (초판기준)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p92 [법령개정]	<p>(7)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中</p> <p>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,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,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,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⑤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</p> <p>⑪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</p> <p>⑳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</p> <p>㉒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p> <p>㉔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</p> <p>㉖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</p>	<p>(7)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中</p> <p>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,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,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,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⑤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</p> <p>⑪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</p> <p>⑳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</p> <p>㉒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p> <p>㉔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</p> <p>㉖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</p>
p94 [법령개정]	<p>(7)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</p> <p>~㉓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p> <p>[신설]</p> <p>(8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</p> <p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,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,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,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③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</p> <p>④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</p> <p>⑥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</p> <p>⑦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⑧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⑨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</p>	
p137 [법령개정]	<p>⑦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⑦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</p>
p256 [법령개정]	<p>㉔ 건설일용근로자(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)로서 수급자격~.</p>	<p>㉔ 건설일용근로자(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「통계법」에 따라 국가데이터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)로서 수급자격~.</p>
p367 [법령개정]	<p>3.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</p> <p>① ~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,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	<p>3.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</p> <p>① ~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,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
p403 [법령개정]	<p>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(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)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㉑ 하자부위,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(동일한</p>	<p>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(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)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서면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. 다만,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</p>

	<p>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)</p> <p>㉞㉟</p>	<p>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</p> <p>㉞ 하자부위,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(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보수 기간은 자재, 장비 또는 인력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.</p> <p>㉞㉟ (현행과 동일)</p>
p404 [법령개정]	<p>㉞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㉞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</p>
p431 [법령개정]	<p>(1) 조정주기</p> <p>㉞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~.</p>	<p>(1) 조정주기</p> <p>㉞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~.</p>
p457 [법령개정]	<p>* 비고</p> <p>3. ㉞의 전문검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~.</p>	<p>* 비고</p> <p>3. ㉞의 전문검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~.</p>
p477 [법령개정]	<p>(2)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등</p> <p>㉞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~.</p>	<p>(2)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등</p> <p>㉞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~.</p>
p477 [법령개정]	<p>(2)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등</p> <p>㉞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·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~.</p>	<p>(2)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등</p> <p>㉞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·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~.</p>
p484 [법령개정]	<p>㉞ 중앙집중난방방식의 난방구획</p> <p>㉞ 난방설비를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</p>	<p>㉞ 중앙집중난방방식의 난방구획</p> <p>㉞ 난방설비를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</p>
p484 [법령개정]	<p>㉞ 난방설비를 중앙집중식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~.</p>	<p>㉞ 난방설비를 중앙집중식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~.</p>
p516 [법령개정]	<p>[8]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</p> <p>1. 개 설</p> <p>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~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~.</p>	<p>[8]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</p> <p>1. 개 설</p> <p>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~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,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~.</p>
p647 [법령개정]	<p>5. 소독약품의 사용</p> <p>~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(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)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·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.</p>	<p>5. 소독약품의 사용</p> <p>~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(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)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·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.</p>
p648 [법령개정]	<p>㉞ 대기오염물질: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㉞ 대기오염물질: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
p648 [법령개정]	<p>㉞ 기후, 생태계 변화유발물질: ~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㉞ 기후, 생태계 변화유발물질: ~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
p648 [법령개정]	<p>㉞ 특정대기유해물질: ~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㉞ 특정대기유해물질: ~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
p648 [법령개정]	<p>㉞ 휘발성유기화합물: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㉞ 휘발성유기화합물: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</p>
p649 [법령개정]	<p>(2) 소음방지대책</p> <p>㉞ ①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</p>	<p>(2) 소음방지대책</p> <p>㉞ ①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</p>

p650 [법령개정]	(3)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 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~.	(3)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 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~.
p654 [법령개정]	④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고 등 ㉕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~.	④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고 등 ㉕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~.
p654 [법령개정]	(2) 보고 및 검사 ㉖ 환경부장관 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~.	(2) 보고 및 검사 ㉖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~.
p655 [법령개정]	(3)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㉗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(「주택법」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)을 설치(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)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~.	(3) (3)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㉗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(「주택법」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)을 설치(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)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~.
p680 [법령개정]	(1)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中 ㉘ 소방시설	(1)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中 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